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499
----------	-------

발의연월일 : 2026. 4. 22.

발 의 자 : 김위상 · 김기용 · 조지연  
강승규 · 김선교 · 윤한홍  
권성동 · 고동진 · 한지아  
박성훈 · 김도읍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년 이상 노후화된 재생에너지 설비를 관리하는 제도가 없어 노후 설비를 무리하게 작동하는 경우 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풍력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계속 사용 적합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심사 결과 해당 전기설비가 계속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풍력발전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및 제20조제1호의2 신설 등).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풍력발전설비”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계속 사용 적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제1호 중 “제11조”를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해당 전기설비가 계속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 ① 제20조에 따라 풍력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내린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p>검사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u>&lt;신 설&gt;</u></p> <p>2. (생 략) 제52조(과태료) <u>&lt;신 설&gt;</u></p> <p>①·② (생 략)</p> <p>③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u></p>	<p>----- -----</p> <p><u>1의2.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해당 전기설비가 계속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u></p> <p>2. (현행과 같음) 제52조(과태료) ① <u>제20조에 따라 풍력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내린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p> <p>②·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p> <p>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u>----- ----- ----- -----.</p>
--	---